19941129

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
```
1. : ()
[ : ()]
2. : 2025 05 09
( :1994 6 4 )
:2025 5 20
```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
